

공고번호 제2025 - 235호

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p>사업주훈련 활용법</p>  <p>기업훈련이 쉽고 편해집니다!</p> <h3>기업훈련 탄력운영제</h3> <p>HRDK 한국산업인력공단</p>	<p>사업주훈련 활용법</p> <p>HRDK 한국산업인력공단</p> <h3>01. 기업훈련 탄력운영제란?</h3> <p>훈련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기업훈련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</p> <p>'25년 10월 기준 315개 기업 5,608개 과정, 160,983개 실시 (전년동월 대비 30% 증가!)</p> 
<p>사업주훈련 활용법</p> <p>HRDK 한국산업인력공단</p> <h3>02. 기존 훈련과의 차이점</h3> <p>01 행정부담 대폭 감소 훈련계획서만 승인받으면 끝! 훈련절차별 대기시간 X 기업은 훈련에만 집중!</p>  <p>1시간 훈련도 OK! 02 업무공백 최소화, 효율적인 훈련! 기업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!</p> 	<p>사업주훈련 활용법</p> <p>HRDK 한국산업인력공단</p> <h3>02. 기존 훈련과의 차이점</h3> <p>03 비대면·쌍방향 훈련 OK! 온라인·오프라인 자유로운 선택! 기업 상황에 맞춰 스마트하게!</p>  <p>탄력운영제 기업 대상 특별 케어 04 우수사례, 부정·부실 훈련 사례 메일링 서비스 탄력운영제 비대면 간담회·설명회 개최 매월 전산, 매 반기 방문 컨설팅까지!!</p> 
<p>사업주훈련 활용법</p> <p>HRDK 한국산업인력공단</p> <h3>03. 탄력운영제 참여방법</h3> <p>참여조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면 <u>어디든 가능</u></p> <p>참여기간 '26년 1월 2일(금) ~ 11월 30일(월)</p> <p>참여방법 HRD-NET을 통한 <u>전산 신청</u> (사업주훈련·과정관리·연간훈련계획서 신청)</p> <p>필요서류 전산 신청으로 진행되므로 <u>별도 제출 X</u></p> 	 <p>지금 바로 시작하세요!</p> <p>기업의 편성장! HRDK가 함께합니다!</p> <p>홈페이지: www.hrd4u.or.kr 문의처: 052-714-8594</p> <p>HRDK 한국산업인력공단</p>

1. 사업 목적

- 경직적인 훈련 운영방식에서 오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 의지를 갖춘 기업의 훈련 참여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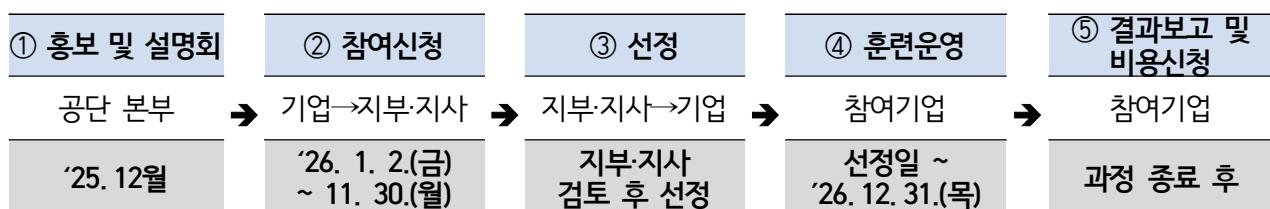
2. 추진 근거

- 「고용보험법」 제114조(시범사업의 실시)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(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)
-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7조(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)

3. 사업명: 기업훈련 탄력운영제(HRD-PASS)

-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한 다수의 훈련과정 일괄 인정
- 1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
-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 방식만 인정

4. 사업 절차



* 훈련의 질 관리를 위해 공단 지부·지사는 전산(월 1회), 방문(반기 1회) 모니터링 실시

1. 모집대상(참여자격)

-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

2. 지원예산: 182억(기업 350개 내외)

※ 참여기업의 훈련에 따른 정부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할 수 있음

3. 사업기간: 선정일로부터 '26. 12. 31.(목)까지

4. 참여신청

- (신청기간) '26. 1. 2. (금) ~ 11. 30. (월)

- 참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 - 예산 조기 소진시 신청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

- (신청방법) 행정지원시스템(HRD-NET)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

※ 참여 전,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 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

- (신청서류) 전산신청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파일 작성 및 제출 불요

※ 단, 공단 지부지사에서 필요시, 훈련계획서 및 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5. 기업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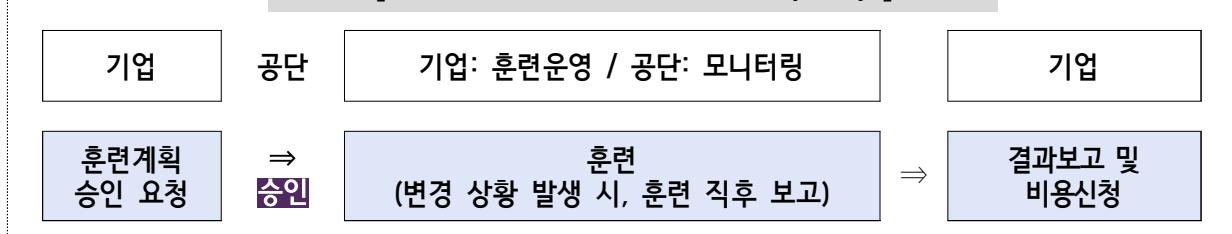
- (선정기준)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지원 대상으로 선정

1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
2.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- 최근 5년('21년~'25년)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
 - 교육·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·단체
 - 그 밖에 기타 내·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1. 훈련운영

- (훈련대상)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
- (훈련유형) 자체훈련 또는 자체+위탁훈련
 - * 자체+위탁훈련 실시기업은 계열관계 및 협력관계 증빙서류를 훈련계획과 함께 제출
- (훈련방법) 집체훈련, 비대면 쌍방향 훈련
- (지원대상 훈련과정)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
 - (훈련시간) 최소 1시간
 - (훈련계획변경) 훈련계획을 승인받은 뒤, 훈련 내용(동일 직종 내)·시간·장소·강사 등 변경 시, 훈련실시 직후에도 변경 사항을 행정 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음.
 - * 다만, 훈련 직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훈련과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훈련과정의 실시 전까지 변경된 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[탄력운영제 기본 운영 절차(예시)]



- (인정 제외 훈련)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름
 - 1. 공통법정훈련
 - 2. 직무 관련성이 낮은 훈련(취미활동, 오락, 스포츠, 부동산 등)
 - 3. 시사,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
 - 4.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목적 과정 등
 - *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과정, 직무법정훈련은 산정 지원금의 50% 지원
- (이수요건) 계획된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출석

2. 지원내용

- (훈련비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훈련비 지원
 - 다만, 신기술(29개 분야)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%까지 지원
 - 기준단가의 200% 이하 시 훈련계획서 과정 포괄인정으로 진행하며, 200% 초과 시에는 공단 지부·지사에서 별도 개별과정 심사 실시

신기술 29개 분야

- ①인공지능(AI), ②빅데이터, ③클라우드, ④사물인터넷(IoT), ⑤5G·6G, ⑥3D프린팅, ⑦일반SW(블록체인 포함), ⑧반도체(지능형 반도체, 시스템 반도체), ⑨첨단소재, ⑩스마트 헬스케어, ⑪AR/VR, ⑫드론, ⑬스마트공장, ⑭스마트팜, ⑮지능형로봇, ⑯자율주행차, ⑰O2O, ⑱신재생에너지, ⑲스마트시티, ⑳핀테크, ㉑메타버스, ㉒사이버보안, ㉓이차전지, ㉔차세대디스플레이, ㉕바이오헬스, ㉖에코업, ㉗수소, ㉘양자, ㉙우주

3. 모니터링: 훈련 품질관리 및 부정훈련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

- 전산(월 1회)·방문(반기 1회) 모니터링 및 훈련생 수강확인 문자 발송 등

4. 참여 유의사항

- (예산 내 운영) 예산 조기 소진시 참여기업 모집 조기 마감 또는 승인받은 훈련계획 중 일부 지원 종료 가능
- (훈련계획 준수) 훈련계획서 내 훈련과정, 목적, 인원 등을 준수하여 운영
- (선정취소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1. 선정 이후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2. 고의·과실로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3. 운영 기간 중 법령 위반, 부정훈련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처분을 받은 경우
4. 기타 관련 법령상 훈련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문의처

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

- 이메일: 4upchu@hrdkorea.or.kr
- 유선: 052-714-8594